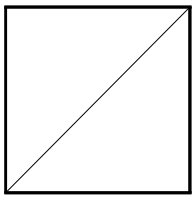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99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7. 8. (제 13 차)

의결사항

㈜다이나믹디자인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권 대 영
제출 연월일	2026. 7. 8.

1. 의결주문

㈜다이나믹디자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㈜다이나믹디자인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(조사기간 : ‘26.3.18.~ ’26.6.18.)한 결과, 발견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과징금 : ㈜다이나믹디자인 [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] 7,400,000원

4. 참고사항

※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

가. 관계법규 : <붙임 1>

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9호, 제429조 제3항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

나. ㈜다이나믹디자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: <붙임 2>

(별지1)

㈜다이나믹디자인에 대한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는 ㈜다이나믹디자인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과징금 7,400,000원을 부과한다.

□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㈜다이나믹디자인 [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]

- 대표이사 : ☆☆☆
- 사업자등록번호 : ○○○-○○-○○○○○
- 본점 소재지 : 광주광역시 △△ 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 △△

□ 조치이유

○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-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,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- 회사는 2021.8.11. ◎◎◎◎◎㈜ 등*을 인수인으로 하여 제5회차(130억원) 및 제6회차(170억원)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,

* 제5회차CB - ◎◎◎◎◎㈜(100억원), ◇◇◇◇◇◇㈜(15억원), □□□□□□□□□㈜(15억원)
제6회차CB - ㈜▽▽▽▽▽▽(70억원), ㈜▷▷▷▷(20억원), ㈜♧♧♧♧♧(5억원), ⊙⊙⊙(5억원), ㈜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(70억원)

- 동 보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제공약정 사실*을 기재 누락한 사실이 있음

* 부동산(광주광역시 ■■ ■■■ ■■■■토지 및 건물 1~6동)에 대한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및 담보부동산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

<붙임 1>

관계법규

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161조(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)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(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)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(이하 "주요사항보고서"라 한다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

9.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·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

제429조(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)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,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(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(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159조제1항,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

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71조(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) ③ 법 제161조제1항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4. 전환사채권,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

3.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

제25조(과징금의 부과)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, 법 제429조의2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.

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[별표 제2호] 과징금 부과기준

3.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

다. 법 제429조제3항(주요사항보고서) 위반사항

(1) 기준금액은 제출의무 발생일(거짓기재·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) 전후 각각 15거래일간(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.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)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.

(2)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.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

4. 부과비율의 산정

가.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(1)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사항 중 (2)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

위반행위의 중요도 / 감안사유	상	중	하
상향조정사유 발생	100분의 3	100분의 2.4	100분의 1.8
해당사항 없음	100분의 2.4	100분의 1.8	100분의 1.2
하향조정사유 발생	100분의 1.8	100분의 1.2	100분의 0.6

나.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

(2) 비계량적 위반사항

(가) 일반기준 <신설 2015.7.14.>

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・중・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.

구분 \ 중요도	상	중	하
주가변동률[주1)]	200% 이상	50% 이상 200% 미만	50% 미만

주1) 공시의무발생일(거짓기재・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) 전후 15거래일간(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,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.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.) 주가변동률[{(당해종목 최고주가/최저주가)×100} - {(동일업종 최고주가/최저주가)×100}]

다. 감안사유 판단기준 <개정 2015.7.14.>

구 분	조 정 기 준
상향 조정 사유	・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・ 공시위반행위로 조치(경고 및 주의 제외)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
하향 조정 사유	・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(다만,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,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. (생략) ・ 부도발생,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,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 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

[별표 3] 증권・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

2.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

가. 동기・결과의 판단요소

【 위법행위 동기 】

(1) 고　　의 :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
(2) 중 과 실 :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
(3) 과　　실 : 정상의 주의를　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

【 법규위반 결과 】

○ 증권·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, 증권·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, 사회·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,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.

(1) 사회적 물의야기

(2) 중대

(3) 경미

나. 판단기준

동기 / 결과	고의	중과실*		과실**
		공시위반	보고의무위반	
사회적물의야기	A	C	D	D
중 대	B	C	D	D
경 미	D	D	D	E

*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.

** 불공정거래의 경우 중과실을 포함한다.

3. 조치기준

판단결과	조치기준	
A	고 발	다만,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.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(과징금)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, 예외적으로 A(고발) 또는 B(수사기관 통보) 조치를 병과
B	수사기관통보	
C	과징금	
D	경 고	
E	주 의	
비고	① 시세조종행위,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. 다만, 시세조종,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.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.	

< 붙임 2 >

㈜다이나믹디자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

Ⅰ. 산정원칙

□ 주요사항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 거래금액의 10/100(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)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1호]

Ⅱ. 산정결과

□ **총 과징금 부과금액 : 7,400,000원**

(단위 : 원)

구 분	과징금 부과금액
2021.8.11. 주요사항보고서(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결정) 제출의무 위반	7,400,000
2021.8.11. 주요사항보고서(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결정) 제출의무 위반	7,400,000

※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*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,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([별표 제2호] 과징금 부과기준)

* 제5회차, 제6회차 전환사채는 회사가 선순위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하나의 의사로 발행하였고, 사채종류, 발행일, 만기일, 전환가액 및 전환청구기간, 담보자산 등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동일 원인사실로 인한 위반으로 판단

< 의안 소관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공정시장과	공 시 심 사 국
연 락 처	02-2100-2688	02-3145-8470